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 제 208 호 2017년 11월 8일(수)	여수시보	시정방침						
		1. 함께하는 소통시정 1. 활력있는 지역경제 1. 수준높은 교육복지 1. 앞서가는 해양관광 1. 걱정없는 안전사회						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								
목 차								
<p>【고 시】</p> <p>○ 여수시 고시 제2017-3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/3</p>								
<p>【공 고】</p> <p>○ 여수시 공고 제2017-2141호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/4</p>								
회 람								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##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1. 8.

### 여 수 시 장

1. 사업명 :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디에스종합건설(주) 대표 임홍남
3. 사업위치 : 여수시 문수동 717-3외 36필지
4. 대지면적 : 44,319m<sup>2</sup>
5. 건축면적 : 9,485.0783m<sup>2</sup>
6. 연면적 : 109,012.1665m<sup>2</sup>
7. 규모 : 아파트 10개동(지하2층/지상15층), 부대복리시설 7동
9. 사업기간 : 2017. 11. 15. ~ 2020. 10. 31.
10. 총사업비 : 174,062,000천원
11. 주요 변경내역
  - 사업기간 변경  
(당초) 2017. 5. 15. ~ 2020. 5. 15.  
(변경) 2017. 11. 15. ~ 2020. 10. 31.
12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혜가민원과(☎659-4120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 공 고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7일

## 여 수 시 장

###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#### 1. 개정이유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중 추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공개 모집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읍·면·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위원 임기를 변경하여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「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조정(안 제6조)

- 위원회 수 조정 : 85인 이내 → 60인 이내
- 지역회의 추천 : 63인 이내 → 27인 이내
- (신설) 공개 모집 : 15인 이내
- 비영리 민간단체, 시민·사회단체 및 학계 추천 : 20인 이내 → 10인 이내
-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추천 2명 →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8인

### 나.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(안 제11조)

-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일부 조정 가능

### 다.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 임기 변경(안 제15조)

- 읍·면·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

## 3. 개정 규칙안 : 붙임

4. 예고기간 : 2017. 11. 8. ~ 11. 28.(20일간)

## 5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(gikwang0906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의견 제출 사항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○ 의견 제출할 곳

가.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나.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참고 : 기획예산과)

다. 전화번호 : 061)659-3419, 팩스 061)659-5872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(담당자 백기광)로 문의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

제6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호를 신설한다.

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: 27인 이내
2.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: 15인 이내
3.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
4.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, 학계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
5.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: 8인 이내

제6호제3항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을 삭제한다.

- ③ 제2항제1호의에 따라 각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·면·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으로 한다.

- ④ 제2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"별지 제1호 서식"에 의하며 제2항제2호,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.

⑤ 삭제

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.

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의2제3항은 삭제한다.

③ 삭제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

성명	(한글)	생년월일	성별	남, 여
	(영문)	E-mail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 - )			
직장		직장주소		
전화번호	휴대폰)	자택)	직장)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
추천 단체명	단체구분 :			
	단체명 :		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분과명 :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			
	제1희망)	제2희망)	제3희망)	
	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
위 사람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20 . . .

○○단체장 - 직인

여수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## 위 촉 장

주 소 :

성 명 :

귀하를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
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여 수 시 장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 신청서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	성별 남, 여
		E-mail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 - )			
직장(학교)명		직장(학교) 주 소		
전화번호	휴대폰)	자택)	직장)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
참여하게 된 동 기	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: (서명)

읍·면·동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**위원회  
주민참여예산( 분과위원회 ) 회의록  
지역회의**

간 사	부위원장	위원장	결 재
일 시		장소	
참석상황	재적위원	참석	불참 (불참위원)
안 건			
○ 심의내용			
○ 의결사항			
○ 기타사항			
서명위원	성명 (서명)	성명 (서명)	

※ 위원별 주요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별도작성 첨부

[별지 제5호서식]

##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 신청서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		E-mail	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 - )				
직장		직장주소			
전화번호	휴대폰)	자택)	직장)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	
참여하게 된 동기				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분과명 :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				
	제1희망)	제2희망)	제3희망)		
	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	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
위 본인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: (서명)

여 수 시 장 귀하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/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·단체 소속 위원은 15/100이내로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: 63인 이내</p> <p>2.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추천 : 15인 이내</p> <p>3.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·사회·직능 단체 추천 : 5인 이내</p> <p>4.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: 2인 이내</p> <p>5. &lt;신설&gt;</p> <p>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·면·동</p>	<p>제6조(구성) ① ----- -----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-----..</p> <p>1. ----- -----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: 27인 이내</p> <p>2.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: 15인 이내</p> <p>3.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두루 갖춘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</p> <p>4.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, 학계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</p> <p>5.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: 8인 이내</p> <p>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·면·동</p>

<p><u>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. 단 인구 8,000명 이상의 읍·면과 인구 20,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.</u></p> <p><u>④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위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"별지 제1호 서식"에 의한다.</u></p> <p>제11조(분과위원회)①~⑦(생략) <u>⑧ &lt;신설&gt;</u></p> <p>제15조(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)①(생략)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~ ⑧ (생략)</p> <p>제15조의2(회의소집 및 의결)①(생략) ② (생략)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.</p>	<p><u>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·면·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으로 한다</u></p> <p><u>④ 제2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"별지 제1호 서식"에 의하며 제2항제2호,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</u></p> <p><u>⑤ &lt;삭제&gt;</u></p> <p>제11조(분과위원회)①~⑦(현행과 같음)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5조(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)①(현행과 같음)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2(회의소집 및 의결)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
--	--